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□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체계 정합성 제고

가. 개정 이유

- 방대한 양과 내용의 복잡성, 시대 변화 등으로 누적된 불합리한 행정 법령은 법 체계의 정합성과 품질 저하를 초래하므로, 법률의 내용상·형식상 위임 범위 이탈이나 행정입법 부작위 등 법령 간 체계의 정합성이 미비한 규정의 정비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등 3개 총리령을 개정

개정안	제 명	개정 조문	내 용
안 제1조	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	제7조제2항	인용조문 정비
		제21조	인용조문 정비
안 제2조	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 시행규칙	제5조제1항 제4호	인용법률 정비
		제6조제2항	인용조문 정비
		제7조	인용조문 정비
안 제3조	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	제10조제2항	인용조문 정비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위임 범위 이탈, 관계법령과의 내용 충돌 등 법 체계에 어긋나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법 체계의 전면적 품질을 제고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